

대전 둔산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대전 둔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구 둔산동 920번지 일원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인한 가구 및 획지(공공청사 G),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도로, 완충녹지)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계획과 ☎042-270-6242), 서구청(도시계획과 ☎042-288-341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.

2025년 9월 12일

대전광역시장

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조서(변경없음)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-	둔산지구	서구 만년동, 둔산동, 월평동, 갈마동, 탄방동, 삼천동 일원	8,677,577.4	

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 계		8,677,577.4	-	8,677,577.4	100.0	
소계		4,805,425.0	-	4,805,425.0	55.4	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,482,884.0	-	1,482,884.0	17.1	
	제3종일반주거지역	2,533,720.0	-	2,533,720.0	29.2	
	준주거지역	788,821.0	-	788,821.0	9.1	
소계		1,759,732.0	-	1,759,732.0	20.3	
상업 지역	일반상업지역	43,303.0	-	43,303.0	0.5	
	중심상업지역	1,716,429.0	-	1,716,429.0	19.8	
자연녹지지역		2,112,420.4	-	2,112,420.4	24.3	

2) 용도지구 결정조서(변경없음)

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교통시설(변경)

(1) 도로(변경)

■ 도로 결정 총괄표

구분	구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합계	기정	568	141,389	2304,738.66	131	37,020	602,739.66	207	64,210	1,017,584	230	40,159	684,415
	변경	568	141,389	2314,228.06	131	37,020	602,868.66	207	64,210	1,026,672.8	230	40,159	684,686.6
광로	기정	6	18,267	804,990	-	-	-	2	7,431	371,550	4	10,836	433,440
	변경	6	18,267	805,759.6	-	-	-	2	7,431	372,177	4	10,836	433,582.6
대로	기정	13	17,624	519,532.24	1	1,930	67,772.24	9	11,882	356,460	3	3,812	95,300
	변경	13	17,624	528,123.04	1	1,930	67,901.24	9	11,882	364,921.8	3	3,812	95,300
중로	기정	86	40,438	480,454.22	44	18,256	367,439.72	35	20,914	97,710	7	1,268	15,304.5
소로	기정	463	65,060	500,663	86	16,834	168,340	161	23,983	191,864	216	24,243	140,459
	변경	463	65,060	500,792	86	16,834	168,340	161	23,983	191,864	216	24,243	140,588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합 계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변경	광로	2	3	50	주간선	12,740 (4,658)	한밭대교	갑천대교	일반도로	-	건고569 (71.09.27)	도로선형 면적변경
변경	광로	3	2	40	주간선	3,748 (3,660)	통신공사연 수원4가	대덕대교	일반도로	-	건고37 (76.03.27)	도로 면적변경
변경	대로	1	17	35~ 37.5	주간선	1,930	광로2-3	대로2-18	일반도로			도로 면적변경
변경	대로	2	15	30~ 42.4	보조간선	1,360	대로1-17	대로3-35	일반도로	-	건고755 (89.12.15)	도로 면적변경
변경	대로	2	16	30~ 33.7	주간선	1,378	대로2-15	대로2-18	일반도로	-	건고755 (89.12.15)	도로 면적변경
변경	대로	2	17	30	주간선	1,725	광로2-6	대로2-15	일반도로	-	건고755 (89.12.15)	도로 면적변경
변경	소로	3	둔산01	5	국지도로	505	둔산920	둔산920	보행자 전용도로	-	대고241 (94.12.27)	도로 면적변경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광로2-3	광로2-3	◦ 도로 면적 변경 - 중 627㎡	◦ 공공청사(방위사업청) 진출입로 가감속자로 확보로 인한 도로선형 및 면적변경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광로3-2	광로3-2	◦ 도로 면적 변경 - 증 142.6㎡	◦ 기결정된 가감속차로 반영으로 인한 도로면적 변경
대로1-17	대로1-17	◦ 도로 면적 변경 - 증 129㎡	◦ 기결정된 가감속차로 반영으로 인한 도로면적 변경
대로2-15	대로2-15	◦ 도로 면적 변경 - 증 7,026㎡	◦ 기결정된 가감속차로 반영으로 인한 도로면적 변경
소로3-둔산1	소로3-둔산1	◦ 도로 면적 변경 - 증 129㎡	◦ 기결정된 도로면적 정정
대로2-16	대로2-16	◦ 도로 면적 변경 - 증 680㎡	◦ 기결정된 가감속차로 반영으로 인한 도로면적 변경
대로2-17	대로2-17	◦ 도로 면적 변경 - 증 755.8㎡	◦ 기결정된 가감속차로 반영으로 인한 도로면적 변경

2) 공간시설(변경)

(1) 공원(변경)

■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명학	어린이공원	갈마동985	1,546.4	-	1,546.4	건고710 (83.12.31)	

※ 명학어린이공원은 가구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도면 상 조서와 불일치하게 들어간 색상을 조서와 일치하도록 오류 정정함
(선형 및 면적 변동없음)

(2) 녹지(변경)

■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91	녹지	완충녹지	서구 둔산동 1523외 10	43,658.8	감)627	43,031.8	건고755 (89.12.23)	

■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91	녹지	◦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- 면적 : 43,658.8㎡ → 43,031.8㎡ 감) 627㎡	◦ 공공청사(방위사업청)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

3)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)

(1) 공공청사(변경)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공공청사	동사무소, 파출소	서구 월평동 1181 서구 월평동 1181외2	1,001.7	-	1,001.7	건고710 (89.01.09)	
변경	2	공공청사	우체국외	서구 탄방동 1031 서구 탄방동 1031외2	1,031.0	증)1.8	1,032.8	건고710 (89.01.09)	
변경	4	공공청사	지방행정	서구 둔산동 1420외14	242,622.1	감)1,365.8	241,256.3	건고755 (89.12.23)	
변경	7	공공청사	동사무소외	서구 만년동 3외2 서구 만년동 3외1	1,287.2	-	1,287.2	대고173 (91.06.14)	
변경	20	공공청사	소방파출소	서구 갈마동 1069 서구 갈마동 1069외2	994.5	-	994.5	건고35 (92.02.06)	
변경	-	공공청사	둔산경찰서	서구 둔산동 950, 951번지 서구 둔산동 950	10,750.3	-	10,750.3	대고2 (99.01.15)	
변경	-	공공청사	해양경찰청 청사	서구 월평동 282-1 서구 월평동 282-1외1	19,835	증)0.2	19,835.2	대고 99 (00.08.31)	
변경	3	공공청사	정부3청사	서구 둔산동 920외1	525,764.5	감)53,409.1	472,355.4	건고755 (89.12.23)	
신설	3-1	공공청사	방위사업청	서구 둔산동 920	-	증)45,982.5	45,982.5		920번지 일부
변경	-	공공청사	파출소, 우체국	서구 둔산동 908-2외2 서구 둔산동 908-4외1	750.1	감)72	678.1	대고241 (94.12.27)	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 - 서구 월평동 1181→서구 월평동 1181외2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
2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오기정정 - 서구 탄방동 1031→서구 탄방동 1031외2 - 1,031.0㎡→1,032.8㎡(증 1.8㎡)	◦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오기정정
4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면적 오기정정 - 242,622.1㎡→241,256.3㎡ (감 1,365.8㎡)	◦ 기 결정된 가감속차로 반영으로 인한 공공청사 면적 오기정정
7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 - 서구 만년동 3외2→서구 만년동 3외1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
20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 - 서구 갈마동 1069→서구 갈마동 1069외2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
-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 - 서구 둔산동 950, 951→서구 둔산동 950	◦ 공공청사 위치 오기정정
-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오기정정 - 서구 월평동 282-1→서구 월평동 282-1외1 - 19,835㎡→19,835.2㎡(증 0.2㎡)	◦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오기정정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면적변경 - 525,764.5㎡→472,355.4㎡ (감 53,409.1㎡)	◦ 기 결정된 가감소차로 및 방위사업청 필지분할 면적 반영으로 인한 공공청사 면적 변경
3-1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(방위사업청) 신설(획지분할) - 45,982.52㎡ (증 45,982.5㎡)	◦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인한 기존 공공청사(3) 획지분할
-	공공청사	◦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오기정정 - 서구 둔산동 908-2외2→서구 둔산동 908-4외1 - 750.1㎡→678.1㎡(감 72㎡)	◦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오기정정

4)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
5) 보건위생시설(변경없음)

6) 환경기초시설(변경없음)

7) 지하보도(변경없음)
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기 정		변 경		비 고
	위치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
단독주택용지	R	628,693.1	R	628,693.1	
근린생활시설용지	SR	24,131.1	SR	24,131.1	
공동주택용지	A1~A3	2,079,725.9	A1~A3	2,079,725.9	
중심상업용지	C1~C5	434,854.23	C1~C5	434,854.23	
준주거용지	AC1~AC8	507,494.9	AC1~AC8	507,494.9	
학교	S1~S2	394,919.6	S1~S2	394,919.6	
공공청사	G, O, O-1	806,162.6	G, O, O-1	796,890.0	감)9,272.6
주차장	P, P-1	61,192.1	P, P-1	61,192.1	
종교시설	D	11,584.3	D	11,584.3	
종합병원	H	21,546.7	H	21,546.7	
전기공급설비	E	5,383.8	E	5,383.8	
통신시설	B1~B2	29,794.4	B1~B2	29,794.4	
도서관, 연구시설	L1~L3	24,526.5	L1~L3	24,526.5	

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공공청사 주변 기 결정된 가감소차로 및 면적 오기정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이며, 도시계획시설선형 변경은 없음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) 토지이용부문(변경없음)

2) 공공시설부문(변경)

(1) 공공청사(변경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	비 고
-	-	용 도	G	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의 기능을 유지 보조하기 위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교육원) - 기숙사 - 기타 부대시설 	
				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• 공공업무시설의 기능을 유지 보조하기 위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나목 교육원(연수원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) -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제2항의 편익시설 ※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의제2항제1호에 따라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	
			O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용용도 	
				O-1	- 동사무소, 파출소, 우체분국, 소방파출소	
			G		80%이하	
		건폐율	O		60%이하	
			O-1		50%이하	
			G		기준용적률 : 800%이하, 허용용적률 : 1,300%이하	
		용적률	O		200%이하	
			O-1		250%이하	
		높 이	G	기정	3층이상	
				변경	3층이상(공공업무시설에 한한다)	
			O		-	
			O-1		-	
		배 치			-	
		형 태			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 참조	
		색 채			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 참조	
		건축선			-	
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6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(변경)(안) : 변경

(1) 제43조(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[표1-14] 공공청사 건축물 용도, 건폐율·용적률·높이(기정)

구 분		공공청사		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	O	O-1
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의 기능을 유지 보조하기 위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교육원) - 기숙사 - 기타 부대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자치센터, 파출소, 우체분국, 소방파출소 <2015.12.28>	
건폐율		80%이하	60%이하	50%이하
용적률	기준용적률	800%이하	200%이하	250%이하
	허용용적률	1,300%이하		
높 이		3층이상	-	-

[표1-14] 공공청사 건축물 용도, 건폐율·용적률·높이(변경)

구 분		공공청사		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G	O	O-1
	허용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의 기능을 유지 보조하기 위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나목 교육원(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) -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제2항의 편익시설 ※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의제2항제1호에 따라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자치센터, 파출소, 우체분국, 소방파출소 <2015.12.28>	
건폐율		80%이하	60%이하	50%이하
용적률	기준용적률	800%이하	200%이하	250%이하
	허용용적률	1,300%이하		
높 이		3층이상(공공업무시설에 한한다)	-	-

다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